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호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2호(2023.4.13.)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57호(2023.6.22.)로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강남구 역삼동 828-2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없음)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

[붙임]

I. 도시·군관리계획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강남구 역삼동 828-2번지 일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 용적률 이하 (999.52%이하 적용)
		높이	기 정	• 최고높이 : 72m 이하
			변 경	• 최고높이 : 75m 이하

※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최고높이	• 72m 이하 → 75m 이하 (증 : 3m)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및 「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4)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없음)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II.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III. 방재계획(변경없음)

IV.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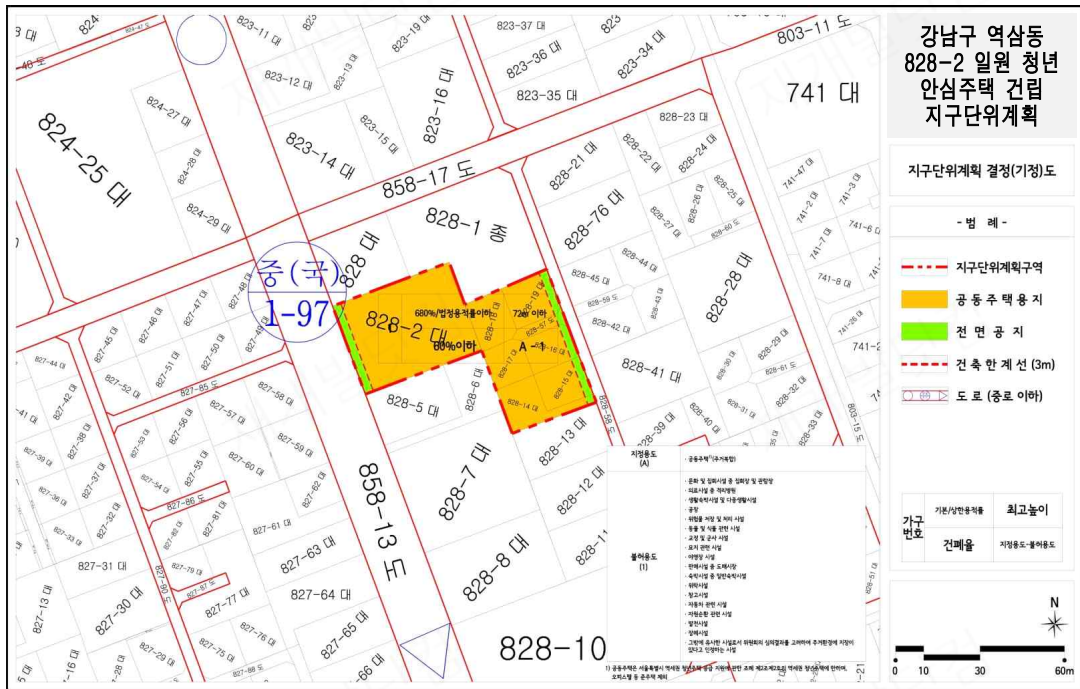
V.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VI.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VII.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VIII. 관계도면(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